

의안번호	2205997
의 퇴 인	송옥주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3.
추 계 번호	24B5471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억 5,400만원(연평균 1억 7,100만원)으로 추계됨

- (국비) 5년간 총 4억 2,700만원(연평균 8,500만원)
- (지방비) 5년간 총 4억 2,700만원(연평균 8,500만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(안 제8조의2제3항) -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의 개발·운영	171	171	171	171	171	854	171
- 국비	85	85	85	85	85	427	85
- 지방비	85	85	85	85	85	427	85

주: 1.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2.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은 현재 개발되어 있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

3. 국비 및 지방비 부담률은 각 50%로 가정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(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)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제3항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, 자질 향상을 위한 <u>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의 개발·운영</u> 등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조의2제3항 (농업기계 임대사업 의 촉진)	○	•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교육 현황

□ 농업기계 임대사업

- (목적) 농기계임대사업소¹⁾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를 제고
 - 농기계임대를 위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, 임대농기계 구입지원 등을 통한 농업기계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화 촉진
- (사업대상) 지방자치단체
 - 지원조건: 국비 50%, 지방비 50%
-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
 - (농기계임대사업소)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
 - (주산지일관기계화) 주요 밭작물 주산지에 경운·정지, 파종·정식, 방제, 수확작업에

1)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55개소(2024.12. 기준)

※ [참고자료 1] 지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참고

투입되는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

- (노후농기계 대체)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

※ 농기계 임대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내역사업(임대사업소 평가 및 컨설팅, 국제농기계박람회)은 미기재

○ 사업예산 및 추진실적

※ [참고자료 2] 최근 4년간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교육 예결산 현황 참고

[표 2] 농업기계 임대사업 예산 현황: 2021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농기계임대 (1067-300)	27,000	27,800	24,800	32,740	27,102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표 3]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개소수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 (계획)
농기계임대사업소	11	16	16	16	13
주산지일관기계화	97	86	72	72	39
노후농기계대체	50	57	45	45	45
합계	158	159	133	133	97

주: 농기계 임대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내역사업(임대사업소 평가 및 컨설팅, 국제농기계박람회)은 미기재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□ 농업기계 관련 교육²⁾

○ (목적) 농업기계 취급조작, 정비실습,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을 통한 농업 기계의 효율적 활용 및 사고 예방

○ (교육대상 및 절차)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(청년농업인, 신규농업인, 여성 농업인, 고령농업인 등)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교육 일정(농한기 등)에 맞춰 신청·교육

○ (교육시행 주체) 도농업기술원, 시·군농업기술센터

○ 사업예산 및 추진실적

※ [참고자료 2] 최근 4년간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교육 예결산 현황 참고

2) 농업·농촌 관련 전문 교육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전담하여 추진 중

[표 4] 농업기계 교육 예산 현황: 2021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(2433-300)					
-농업기계교육	907	907	907	907	907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(농촌진흥청) 제출자료

[표 5] 농업기계 교육 추진실적: 2021~2024년 6월

(단위: 명)

구분	2021	2022	2023	2024. 6.
수료 인원(계)	30,808	29,794	36,949	20,321
(전문교육) 기계화영농사양성	496	430	313	130
(안전교육) 여성농업인, 현장·안전실무	30,312	29,364	36,636	20,191

주: 농업기계 교육사업(기계화영농사양성, 여성농업인, 현장·안전실무) 운영 중

나.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—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의 개발·운영 (안 제8조의2제3항)

-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의 개발·운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본 추계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‘농업기계 교육사업’ 중 기계화영농사양성교육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다만,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은 현재 개발되어 있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하고, 전문교육과정 운영비용에 대하여 추계
- 추계에 필요한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
 - (교육인원) 매년 255명
 - 기계화영농사양성교육 기준 17개 과정, 1개 과정당 15명
 - ※ 이때 추계기간 동안 교육인원 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(1인당 교육단가) 67만원
 - ※ 이때 추계기간 동안 교육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(분담률) 국비 50%, 지방비 50%

- 추계결과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억 5,400만원으로 추계됨
- (국비) 5년간 총 4억 2,700만원
 - (지방비) 5년간 총 4억 2,700만원

[표 6]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교육대상자 수 (A, 명)	255	255	255	255	255	
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 (B, 백만원/명)	0.7	0.7	0.7	0.7	0.7	
추가재정소요 (C=A×B, 백만원)	171	171	171	171	171	854
국비(C×50%)	85	85	85	85	85	427
지방비(C×50%)	85	85	85	85	85	427

주: 1.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2.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은 현재 개발되어 있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(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)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지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<지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>

(2024.12. 기준, 단위: 개소)

구분	농기계 임대사업소
부산광역시	2
대구광역시	5
인천광역시	16
광주광역시	3
울산광역시	3
세종특별자치시	4
경기도	26
강원특별자치도	71
충청북도	43
충청남도	35
전북특별자치도	51
전라남도	73
경상북도	72
경상남도	46
제주특별자치도	5
합 계	455

[참고자료 2] 최근 4년간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교육 예결산 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<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교육 예결산 현황: 2022~2025년>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)	내역사업	지원형태 및 보조율(%)	주요내용	2022		2023		2024		2025
			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	결산 (집행중)	예산
농기계임대 (1067-300)	농기계임대사업소	보조 (국비 50%)	임대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건 축비 등 지원	7,500	4,967	6,750	6,122	6,750	—	5,850
	주산지일관기계화	보조 (국비 50%)	주요 발작물 주산지에 일관기계화 를 위한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	13,500	12,022	12,150	11,503	15,450	—	15,450
	노후농기계대체	보조 (국비 50%)	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비용 지원	5,000	5,688	4,500	4,445	8,740	—	5,652
	임대사업평가및컨설팅	연구용역 (국비 100%)	임대사업소 운영 평가 및 컨설팅	1,400	1,352	1,400	1,352	1,400	—	150
	국제농기계박람회	보조 (국비 100%)	국제농기계박람회 개최 지원	400	400	—	—	400	—	—
	소계			27,800	24,429	24,800	23,422	32,740	—	27,102
농업기계안전 교육사업 (2433-300)	농업기계교육	보조 (국비 50%)	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활용 기술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 지원	907	838	907	863	907	—	907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제출자료